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4. 27 선고 2021가단25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조합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7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전남 완도군 D 전 92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. 4. 19. 접수 제93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별지 기재 부동산'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편병호

별지